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 본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 및 대학입학전형・홍보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025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주 요 변 경 사 항

7	- 분			주 요 변							
	학생부 교과	② 수능최저학력 - 자연계열, ⁽	대: 276명 → 316명 력기준 선택과목 제한 폐지 인문계열 동일 (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역		t,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① 전형별 모 집	 인원 변경								
			2024학년도		2025학년도						
			ACE전형	586	ACE전형	595					
		첨단	단융 합인재전형	92	첨단융합인재전형	92					
		Ī	¹ 른기회1전형	84	고른기회1전형	84					
		Ī	¹ 른기회2전형	46	고른기회2전형	45					
		특수	교육대상자전형	10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0					
	학생부	특성화고등	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105	특성화고 등을졸 업한재직자전형	105					
	종합		소계	923	소계	931					
	논술 위주	- 수능최저학력기준 • 의학과: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등급 합 6 이내 • 약학과: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① 약학과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선발 시행 - 선발인원: 5명 - 출제범위: 수리논술 -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중 3기 영역 등급 합 5 이내 ② 의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선택과목 제한 폐지 -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등급 합 6 이내									
			원 변경: 793명 → 753명 집단위 수능 선택과목 제								
		계열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자연	- 수학: 미적분 또는 기: - 탐구: 과탐 중 택2	-	· 수학: 선택과목 제한 없음 · 탐구: 과탐, 사탐 중 택2 · 자연계열 모집단위 선택과목별 가산점 · 수학: 미적분/기하 - 표준점수 3% 가산전 탐구: 과학탐구 - 백분위 자체변환점수 3	점					
		인문	- 수학: 선택과목 제한 역		수학: 선택과목 제한 없음						
		(변경없음)	- 탐구: 사탐, 과탐 중 틱	백2 -	탐구: 사탐, 과탐 중 택2						
		※ 특 성화고졸	업자전형은 탐구영역 반영	시 직탐(2교	가목) 또는 계열별/모집단위 지정 탐구영역(2과목) 반영 					

모집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 방법

시기	유형		전 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및 비율
			전체(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34	[일괄]수강능력시험 100
	재외국민		의학과		2	[1단계]수강능력시험 100 (10배수)
	(정원외)		간호학과		1	[2단계]1단계성적 60 + 면접 40
			소계		37	
	학생부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316	[일괄]학생부교과 100
	교과		소계		316	
			학생부종합(ACE전형)		595	[1단계]서류종합평가 100 (3배수)
			학생부종합(첨단융합인재전형)		92	[2단계]1단계성적 70 + 면접 30
	학생부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전형)		84	[일괄] 서류종합평가 100
	종합	고른	학생부종합(고른기회2전형)		45	
수시	ОН	기회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		10	[1단계]서류종합평가 100 (3배수)
+^1			<mark>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mark> 형	!)(정원내외) [◎]	105	[2단계]1단계성적 70 + 면접 30
			소계		931	
	논술		논술(논술우수자전형)		150	[일괄]논술 80 + 학생부교과 20
	위주		소계		150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10	[일괄]학생부교과 4 + 학생부 출결 1	
	실기/		27/27(34774(31)26)		10	+ 실적 40 + 실기 30 + 면접 25
	르기/ 실적					[1단계]서류종합평가 100 (3배수)
	르ㄱ 위주		실기/실적(국방IT우수인재1전형)(정원외	4)	23	[2단계]1단계성적 70 + 면접 30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회(P/F)
			소계	33		
			소계	1,430		
			수능(일반전형1)(의학과)		10	[일괄]수능 95 + 면접 5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의학과	1	[일괄]수능 95 + 면접 5
				약학과	3	[일괄]수능 100
	나군		수능(일반전형2)(약학과)		10 3	[일괄]수능 100
	'-		수능(기회균형전형)(약학과)		3	
			4 1 (7 Htt 0 4 0171107171)		_	[1단계]수능 100 (5배수)
			수능(국방IT우수인재2전형)		7	[2단계]1단계성적 80 + 면접 20
74 11			A.L. (OLULZI Z. 2)		/11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회(P/F)
정시			수능(일반전형3)		611 12	
	-		수능(일반전형4)(교차)		51	
		-	수능(농어촌학생전형)		25	[일괄] 수능 100
	다군	고른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수능(기회균형전형)		20	
		기회	누증(기외판영산영)			
		(정원외)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	자전형)	수시 미충원 시 선발	[1단계]서류종합평가 100 (3배수)
			10.01.10	'선발 '	[2단계]1단계성적 70 + 면접 30	
			소계		753	
			합계(재외국민 제외)		2,183	
			이기대 의 지지하는			

- ◎ 정원내 2명, 정원외 103명을 모집함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 * 실기/실적(국방IT우수인재1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수시 미충원 시 정시에 이월하여 선발함
- ※ 수시 및 정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여부 및 세부 사항은 2025.02.21.(금) 09시 이후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		내용
	학생부교과(고교추천	선전형)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를 모두 응시한 자만 지원 가능 탐구 2과목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수시	학생부종합(ACE전형)	의학과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등급 합 6이내
		약학과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의학과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등급 합 6이내
	근절(근절구구시인영)	약학과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정시	수능(국방IT우수인자	2전형)	한국사 3등급 이내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등급)으로 반영하며, 탐구영역은 직탐을 포함할 수 없음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원내]

						수시	1					;	정시		
계열	모집단위	고교 추천	ACE	첨단	고른1	고 른 2	재직자 (정원내)	논술	체육	수시 소계	일반1 (의학과)	일반2 (약학과)	일반3	일반4 (교차)	정시 소계
	기계공학과	23	47		6	5		5		86			47		47
	산업공학과	20	23		4	2				49			35		35
	화학공학과	5	20		1	1		7		34			10		10
	첨단신소재공학과	6		17	1	1		7		32			11		11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4	30		3	2				49			21		21
	환경안전공학과	5	13		2					20			17		17
	건설시스템공학과	7	13		2	1				23			14		14
	교통시스템공학과	7	13		3					23			14		14
	건축학과	12	23		3	2		13		53			21		21
	융합시스템공학과						1			1					0
	AI모빌리티공학과	5		15	2	1		4		27			13		13
자	전자공학과	32	32		11	5		42		122			70		70
연	지능형반도체공학과	5		10	2	1		5		23			17		17
	소프트웨어학과	11	20	30	4	2		10		77			26		26
	사이버보안학과	8	17		2					27			12		12
	디지털미디어학과	18	44		5	2				69			26		26
	국방디지털융합학과									0					0
	수학과	6	10		1			16		33			8		8
	물리학과	5	19		2					26			7		7
	화학과	5	18		1	1				25			12		12
	생명과학과	5	20		2	1				28			18		18
	의학과		20					10		30	10				10
	간호학과	7	25		2	2				36			22	12	34
	약학과		15					5		20		10			10
	경영학과	20	25		5	2		16		68			42		42
	e-비즈니스학과	9	15		1					25			19		19
	금융공학과	5		20						25			15		15
	글로벌경영학과						1			1					0
	국어국문학과	6	10		2	1		5		24			6		6
	영어영문학과	10	25		3	2				40			20		20
인	불어불문학과	6	13		1	1				21			6		6
	사학과	6	14		1	1				22			5		5
문	문화콘텐츠학과	5	9		1	1				16			11		11
	경제학과	14	12		5	3				34			18		18
	행정학과	10	10		2	2				24			18		18
	심리학과	9	16		2	1				28			15		15
	사회학과	5	15		1	1		0		22			7		7
	정치외교학과	5	9		1	1		5		21			8		8
	스포츠레저학과								10	10					0
	계	316	595	92	84	45	2	150	10	1,294	10	10	611	12	643

[정원외]

		수시		수	시					정시	Ч			
계열	모집단위	재외 국민 (2%)	특수 교육	재직자 (정원외)	국방1	수시 소계	농어촌 (의학과)	농어촌 (약학과)	기회 균형 (약학과)	국방2	농어촌	특 성 화고	기회 균형	정시 소계
	기계공학과	7				0					3	2	2	7
	산업공학과	4				0					2	2	1	5
	화학공학과	2				0					1	1	1	3
	첨단신소재공학과	2				0					1	1	1	3
	응용화학생명공학과	4				0					2	2	1	5
	환경안전공학과	2				0					1	1	1	3
	건설시스템공학과	2				0					1	1	1	3
	교통시스템공학과	2				0					1	1	1	3
	건축학과	4				0					1	2	1	4
	융합시스템공학과			52		52								0
	AI모빌리티공학과					0								0
자	전자공학과	3				0					2	2	2	6
연	지능형반도체공학과					0								0
	소프트웨어학과	3				0					2	3	1	6
	사이버보안학과	1				0					1	1	1	3
	디지털미디어학과	4				0					2	3	2	7
	국방디지털 융 합학과				23	23				7				7
	수학과	2				0					1			1
	물리학과	2				0					2			2
	화학과	2				0					2			2
	생명과학과	2				0					1			1
	의학과	2				0	1							1
	간호학과	1				0					3			3
	약학과					0		3	3					6
	경영학과	3	2			2					2	3	1	6
	e-비즈니스학과					0								0
	금융공학과					0								0
	글로벌경영학과			51		51								0
	국어국문학과	2	1			1					2			2
	영어영문학과	3	1			1					2			2
인 인	불어불문학과	2	1			1					2			2
	사학과	2	1			1					2			2
문	문화콘텐츠학과	2				0					2		1	3
	경제학과	3	1			1					2			2
	행정학과	2	1			1					2			2
	심리학과	2	1			1					2			2
	사회학과	2	1			1					2		1	3
	정치외교학과	2				0					2		1	3
	스포츠레저학과					0								0
	계	37*	10	103	23	136	1	3	3	7	51	25	20	110
* 7HO	 미국민(2%): 재외국민과	이그이	트벼저히	병(미지이오	11111 713	로 미지디	이벼 치대	미지이의	하는 표기의	t 거이크	민지다	이 人게이	세느 미포	a

^{*} 재외국민(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모집인원내) 기준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인원을 표시한 것으로, 모집단위 소계에는 미포함

학생부 교과 및 출결 반영방법

1. 대상 전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2.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편제) 반영
- 학년별 가중치 없음, 교과별 가중치 없음
- ※ 교과(편제)명에 따라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
- 3. 인정범위 및 반영비율: 전형별 학생부 반영비율의 100%(기본점수 없음)

대 상	인정범위	반영 교과
졸업(예정)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조기졸업자*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 조기졸업자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원 불가

4. 반영방법

<교과 반영방법>

가. 활용지표: 등급(성취도) 및 이수단위

나. 총점 환산 방법

총점(100점 만점) =
$$\frac{\sum (교과별 평균등급점수)}{$$
 반영 교과 수

다. 평균 등급점수 산출방법

1) 교과별 평균등급 산출

교과별 평균등급점수 =
$$\frac{\sum (과목별 이수단위 \times 등급점수)}{\sum (과목별 이수단위)}$$

2) 등급점수

78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구분	성취도	Α		В		С				
-	등급점수	100	99	98	95	90	85	75	65	0

라,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단, 진로선택 교과목은 상위 3개 과목까지 반영

<비교과(출결) 반영방법>

가. 활용지표: 미인정(무단)결석일수

나. 총점(1점)

미인정(무단)결석일수	0~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일 이상
점수	1	0.8	0.6	0.4	0.0

* 체육우수자(축구)전형만 해당

5. 비교내신: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202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생부 성적이 없거나 학생부 등급산출이 불가능한 자 등은 논술점수/실적점수 등을 활용하여 산출

* 단,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는 비교내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논 술 반 영 방 법

1. 논술 유형, 출제경향

계열	출제경향
자연계열 (약학과 포함) [수리논술]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주제를 다룸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부분점수를 부여함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의학과 [수리논술 + 과학논술(생명과학)]	- 수리논술: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 과학논술: 자연과학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부분점수를 부여함 -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인문계열 [통합논술(언어·사회)]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 요약형 혹은 비교·대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 출제 요약형 문제의 경우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주제문들을 간추려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 비교·대조형 문제의 경우 제시문들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차이점을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 통합형 문제의 경우 3~5개의 독립된 제시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제시문들은 인문/사회분야를 비롯한 범교과 과정에서 골고루 취함)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2. 시험시간: 120분

수 능 반 영 방 법

1.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비고
자연1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약학과 (의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제외)	20%	35%	15%	30%		*수학: 선택과목 제한 없음 미적분/기하 선택 시 표준점수에 3% 가산 *탐구: 사탐, 과탐 중 택2
자연2	h연2 의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40%	10%	30%	총점에서 등급별로 감점	과학탐구 선택 시 백분위 자체 변환점수에 3% 가산
인문1	경영대학, 간호학과(일반전형4)	25%	40%	15%	20%		*수학: 선택과목 제한 없음
인문2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35%	25%	15%	25%		*탐구: 사탐, 과탐 중 택2

- ※ 계열은 본교 기준 계열을 의미하며, 지정된 선택과목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탐구영역에 직탐 반영 가능

2. 수능 성적 활용지표

가. 수능성적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표준점수	자체 변환점수	자체 변환점수	감점방식

나. 수능총점 계산식: 각 영역별 점수의 합산(한국사는 총점에서 감점)

- 1) 국어, 수학 = $\frac{$ 표준점수}{표준점수의 만점} \times 반영비율 \times 1,000
- 2) 탐구 = 각 과목의 변환점수의 합 각 과목의 변환점수 만점의 합 × 반영비율 × 1,000
- ※ 변환점수표는 2025학년도 수능성적 발표 후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 응시한 영역의 탐구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변환점수 산출
- 3) 한국사: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감점 방식)

다. 영어 과목 변환점수: 아래 표의 환산방식에 따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 등 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점수(10%)	100	96	92	84	60	40	20	10	0
변환점수(15%)	150	144	138	126	90	60	30	15	0

라. 한국사 과목 반영점수표: 한국사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감점 방식)

구 분	1등급	2등급	3 등 급	4 등 급	5 등 급	6 등 급	7 등급	8등급	9 등 급
반영 점수		감점	l없음		-5	-10	-20	-30	-40

지 원 자 격

					학생부 교과				ᅙ	ᅡ생부종합	합				논술
		,	구는	<u>=</u>	<u> </u>		천단		고른	기회1		고른	특수		
	1 2					ACE	첨단 융합 인재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	특성 화고 <u>졸</u> 업자	기초 생활	 기회 2	교육 대상자 (정원외)	재직자 (정원내외)	논술 우수자
고등 학교 졸업 (예정) 자	하더 아鳽	<u></u>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제육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인가대안학교	-	0	0	0	- 0	- O	0	0	0	-* - - -	0
	<u>졸</u> 업 연도	국외고 2024. 12.~ 2022.12.~2024. 11. 2022. 12.이전		0				0	0				-		
ļ	l 검 ⁷	 정고		J22. 12.이신 합격자	<u>-</u> -				 					-	

					실기	/실적		수	능		
구분					체육 우수자 (축구)	국방IT 우수인재1 (정원외)	일반전형1(의학과), 일반전형2(약학과), 일반전형3, 일반전형4(교차)	국방IT 우수인재2 (정원외)	농어촌 학생 (정원외)	특성화고 졸업자 (정원외)	기회균형 (정원외)
				일반고 자율고	0				0		
고등 학교 졸업 (예정) 자	하더 수 등	국내고	인 기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명재학교 특성화고 나대안학교	O -	○ 나이 제한**	0	○ 나이 제한**	- O -	- O	0
	<u>졸</u> 업 연도	2024 12 ~		0				0	0		
	검정고시 합격자			○ (2022.01. 이후)				-	_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2001.06.02. ~ 2009.06.01. 사이 출생자)

1. 학생부교과(수시)

전형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	2022년 1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인정가능유형의 고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인정가능유형: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만 지원 가능하며 아래 해당자는 지원 불가 ① 특성화고, 종합 및 일반고 전문(실업)반 졸업(예정)자 ② 특목고 중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③ 일반고 재학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④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및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위탁학생 ⑤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자

2. 학생부종합(수시)

71-1			7101 7179				
전형 	지원 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 <mark>종</mark> 합 (첨단 융 합인재전형)	_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 ' -		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대상자		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제출 가능자 -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 — .	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유 형	내 용				
		6년과정 이수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				
		① (부·모·지원자)	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u>본인, 부, 모가 모두</u>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40147174 01 4 7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				
		② 12년과정 이주자 (지원자)	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				
	농어촌	 	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학교이어야 함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				
학생부종합	벽지 출 신자		니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고 른 기회1전형)			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경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역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				
		벽지가 아닌 지역으	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조·중능교육법시행당 육시설 출신자는 지	5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 원할 수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				
			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				
		되어야함)					
		•	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에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F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특성화고	유 형	내 용				
	출신자	① 동일계열의 고교 7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 종합고의 일반고 교	육과정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특성화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함)				

전형		지원 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특성화고교 출신자는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1전형)의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기초생활	유 형 내 용
	수급자,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한무보가속 지원대상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차상위 계층 대상자인 경우(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선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학생부 종 합	사회 기여자	①~⑥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②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③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④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역생무용업 (고른기회2전형)	사회 배려자	하는 근무지에서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①~③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② 장애인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인 자의 자녀 ③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다자녀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가구 고등교육법	
학생부 종 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① 초·중 진법에 수하고 ② 초·중 ③ 특성화 ④ 평생교	15년 3월 1일 기준) 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재직기간, 인정범위 유의사항>
재직자전형)	구분	내용
(정원내,외)	재직	-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기간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 면 작성 제작등병시성의 제작기간의 4대 모임 기업 확인시성의 기업기간이 나를 경우 제작등병시성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전형		지원 자격				
	구분	내용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산업체 인정 범위	-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자영업자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체 및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등(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가입 대상 기관)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정원외)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 지원자 본인이 장애인대상자 또는 상이등급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자격

3. 논술 및 실기/실적(수시)

전형

		15 11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실기/실적 (체육우수자 전형(축구))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2022년 1월 이후 학력 인정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022년 ~ 2024년 청소년대표 ※ 단, 국내·외 대회에 선발 및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단순 소집 제외) ② 2022년 ~ 2024년 전국대회 4강 이내 입상자 ③ 2022년 ~ 2024년 고등리그 왕중왕전, K리그 U18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 단, 위 2), 3)번 조건의 해당 기간 중 경기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대회(또는 리그) 가운데 최소한 1개의 대회 (또는 리그)에서 1학년 때는 소속팀 출전경기 시간의 30% 이상, 2학년 때는 40% 이상, 3학년 때는 50% 이상 출전 해야 함 ※ 포지션별 인원: FW(5명이내), MF(5명 이내), DF(5명이내), GK(2명이내) 선발 (단, 포지션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대상 제외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인정된 자로서 ICT ① 군 인사법 제10	들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전문성 및 글로벌역량, 리더십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D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학자의 임관기준일: 2029.06.01.(2001.06.02. ~ 2009.06.01. 출생자)			
	구 분	내 용			
실기/실적 (국방IT우수인재1 전형) (정원외)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어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친권자 동의 및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수능(정시)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전형	지원 자격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ICT전문성 및 글로벌역량, 리더십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025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9.06.01.(2001.06.02. ~ 2009.06.01. 출생자)							
수능	구 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국방IT우수인재2 전형) (정원외)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②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③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유 형 내 용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본인, 부, 모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02-7)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							
	* 6년 과정 이수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 12년 과정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 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 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거둬	7101 7174						
전형	지원 자격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수능	위주의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국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L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특성화고졸업자		유 형 내 용					
전형) (정원외)	2	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특성화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함) 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 사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수능	유 형	내 용					
(기회균형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정원외)	* 학생이 의 학생 른 증명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차상위 계층 대상자인 경우(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며 자격에 따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나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 목(아래 ①~④))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 (2025년 3월 1일 기준)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④ 평생교	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재직기간, 인정범위 유의사항>					
학생부종합	구분	내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재직자전형) (정원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수시 미충원시 선발	재직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 산하지 않음					
	기간	•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 공지)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산업체 인정 범위	-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자영업자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체 및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등(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가입 대상 기관)					